



# 새로운 York Antwerp Rules 2004 탄생

## 공동안전 개념에 한하도록 제한 및 축소

공동해손의 통일된 처리를 위하여 제정된 York Antwerp Rules(YAR)이 개정돼 새로운 YAR 2004 이 탄생하였다.

YAR은 국제협약이 아니며 대신 운송계약(B/L, C/P) 등에서 공동해손정산에 이를 적용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규칙은 YAR 1974 및 1994이다.

YAR 1994이 제정된 이후에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ers (IUMI)는 YAR 1994의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공동해손의 인정범위를 '공동의 안전' 및 '공동의 이익'의 개념들 중 공동의 안전의 개념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 및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IUMI의 제안은 2004년 6월 Vancouver에서 열린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CMI) 총회에서 해운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IUMI에서 제안한 일부 변경안은 상당수의 위원들의 지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YAR 2004이 탄생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Rule VI 구조비와 관련, 구조비 및 관련비용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정, 구조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분담하게 될 구조비를 포함하여 구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동해손 분담가액이 아닌 구조된 가액을 근거로 하여 분담금을 이해당사자에게 Credit/Debit하도록 개정했다.

Rule XI 선원급료 및 유지비의 공동해손 인정제한조항의 경우 피항하는 동안 또는 원래의 지점까지 복귀하는 동안 발생한 선원비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피난항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선원비는 공동해손의 인정범위에서 삭제했다.

Rule XX 공동해손 기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일부 선원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동해손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 자금 우선 조달에 대한 댓가로 인정했던 2%의 공동해손기금에 대한 수수료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주요회원이 선주로 구성된 해운단체인 BIMCO(발틱 국제 해운 회의소)는 YAR 2004가 YAR 1994에 비해 선주에게 불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YAR 2004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BIMCO는 통상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서에 사용되고 있는 공동해손규정은 'York Antwerp Rules 1994 or any subsequent amendment thereto'인데 YAR 2004는 YAR 1994의 개정이 아니므로 위 Clause를 그대로 쓰더라도 YAR 2004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논쟁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위 Clause 보다는 'York Antwerp Rules 1994'라고 뒷 부분을 생략한 Clause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